

## 대학입학전형 회피·배제운영규정

제 정	2011. 3.
개 정	2014. 6.
개 정	2020. 4.

**제1조 (목적)** 학생 선발을 위한 평가 및 관리업무에서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을 대학스스로 관리하여 학생선발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용어)** ①회피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(이하 '응시생'이라 한다)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스스로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려는 것을 말한다.(개정 2020.04.29.)

②배제란 대학의 장이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를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.(개정 2020.04.29.)

③(삭제 2020.04.29.)

**제3조 (사유)** 회피, 배제의 사유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.(개정 2020.04.29.)

①회피사유

1.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로 교직원, 교수 또는 사정관 본인이 스스로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(개정 2020.04.29.)

②배제사유

1.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 본인 및 배우자가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로 교직원, 교수 또는 사정관 본인이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(개정 2020.04.29.)

③(삭제 2020.04.29.)

**제4조 (규정)** ①교직원, 교수 또는 사정관 본인은 자신과 가족의 관련사항을 사전에 입학처에 제출한다. (개정 2020.04.29.)

1. 관련 내용은 연말정산 가족자료, 인사자료(인적사항), 가족 장학사항, 모집 시기별 지인 관계자료 등이다.

2. ①항의 내용은 법적인 조치외에는 정보를 보호한다.

②입학처에서는 ①항의 사항을 입시전형계획 수립과 동시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당해학과 소속 교직원에게 관련사항을 제출 받는다.(개정 2020.04.29.)

**제5조 (처리)** 다음의 경우 대학입학전형에서 배제한다.(개정 2020.04.29.)

①제3조의 경우에 해당되는 교직원, 교수 또는 사정관 본인이 임의적으로 회피·배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(개정 2020.04.29.)

②연속 2회 이상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학입학전형의 모든 전형과정에서 배제한다.

**제6조 (처리신청)** ①발견하지 못한 관련 당사자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외부인이라도 입학처로 증거서류를 제시하며 이의 신청 할 수 있다.(개정 2020.04.29.)

1. ①항의 경우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여부를 결정한다.(개정 2020.04.29.)

2. ①항의 관련이 없을 경우라도 공정관리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전형에서 배제할 수 있다.

**제7조 (기타)**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.

제8조 (효력) 본 규정은 2011년 2월 18일 제정하고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의 특례) 이 규정중 제목과 제1조, 제4조의 개정사항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의 특례) 이 규정 중 규정명과 제2조, 제3조의 개정사항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적용한다.